

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5월17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
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4)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7)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7)
1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4)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4)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2)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0)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2)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3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1)
3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1)
4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3)
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7)
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4)
4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4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3)

상정된 안건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3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3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3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1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15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16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 19
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4) 21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 27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 29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 29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 29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 29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32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33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33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34

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36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3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	41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	41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	41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44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44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44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44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44
4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48
4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49
4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3)	49

(14시39분 개의)

○소위원장 조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여는 관계로 지금 오후 2시 반에 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늦을 것 같기도 하니까 가급적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고 속기록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0)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3)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0)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이 아니고 3권입니다. 3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정비계획에서 결정되고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분담금추산액에 대한 정보를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등이 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서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지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 내용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문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29조 제3항을 개정하려는 이 안과 132조 제2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그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등이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만 행위 제한이 부과되는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13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135조 제2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40조 제1항 제2호는 132조 제2항 각호의 행위와 유사하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한 자에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라고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62페이지에서부터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계획서에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면서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방법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여자나 차입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신고 이외에 안 제124조에 따라 자금 차입 내역을 공개하고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도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요건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신고 수리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신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구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75페이지에서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기상 특보가 발표된 때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퇴거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철거 대상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인 경우에는 철거가 제한되는 시기에도 사업시행자가 철거는 하지 않되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주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철거뿐만 아니라 퇴거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절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입법례를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철거가 제한되는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한 사업시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자의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다만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을 의결하도록 하고 조합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등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조합임원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등 고의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이 고의로 해산을 늦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합원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해산을 의결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총회의

안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안전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예와 같이 개정안에서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해산을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6페이지에서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등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타당합니다만 이미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 협의 등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외에 자치구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조례 모두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협의체를 자치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조합임원 해임 총회,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변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른 조합임원 해임 총회 및 조합임원의 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현행 총회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집 요건을 강화할지 여부는 2002년 동법 제정 당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한 도정법의 연혁이나 조합임원에 대한 견제 가능성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다만 창립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의 위임을 받아 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로 보임에도 시공사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와 직접 출석 요건이 달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공사 변경을 위한 총회는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와 신규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총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제를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민법의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99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과는 달리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결정권자의 결정을 돕는 정보 제공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유사 입법례의 법체계를 고려하되 건설업자의 표시·광고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민간정비업체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05·106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없이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을 마련하고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년 12월 29일 날 심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안의 취지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에서 정비계획의 변경 제안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기준일 이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때에는 그 여러 명 중 대표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개정안의 1항과 2항을 합쳐서 규정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과 정비계획 변경 제안일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의견 1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2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수록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희는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제일 마지막 조오섭 의원안에 수정의견 1하고 2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러면 수정의견 2로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조오섭 의원안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이 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안의 경우에는 알박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하고 정비계획을 변경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서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정의견 2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하고 지구지정 변경하는 경우하고 날짜는 맞출 수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되면 이법을 발의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을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느 안이든지 수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큰 틀에서, 차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사기분양 사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한 15년 전에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자기들하고 고소고발 갈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허위나 과장 등의 광고를 해서 조합원들 유혹해서 분양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조합원들 막대한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차관님 또 새로 오셨고 새 정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합원 또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라든지 또 과장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감안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조속히 좀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해 주십시오, 국토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의견 없으신가요?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차관님, 지금 수정의견 1, 2가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지금 여러 가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알박기 등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의견이 수정의견 1번이고 2번은 좀 우회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는 게 원 발의자의 입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차관님 보시기에 어쨌든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하는 게 우리 법안소위의 목적인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도 이 부분은 입법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법 취지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1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다 하셨습니까?

○**장경태 위원** 예.

○**김교흥 위원** 차관님, 그러면 조오섭 의원 건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변경·고시일 등 산정기준일이 여러 날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계획이 수립되고 또 여러 가지 변경 과정을 거칠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할 때는 바로 직전에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인가가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직전에 있는 정비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인가가 신청이 되기 전에 정비계획이 최초로 지정이 되고 나서 여러 차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어느 경우로 정할까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정일자가 불명확하게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된……

○**김교흥 위원** 최초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최초로 지정된 경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법안이.

○**소위원장 조응천** 해소되셨나요?

○**김교흥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천준호 의원님 안 페이지

지 100페이지요. 이게 건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어떻게, 국토부에서 제보를 많이 받고 실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부분은 주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또 수주를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자 등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과다하게 제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특히 과열된 지역, 수주가 과열된 지역에서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라든지 제고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과도한 규제다, 적절치 않다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계와의 어떤 의견 조율은 다 마친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이 안을, 이 법안에서는 표시나 광고 행위가 어떤 경우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돼 있고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그래서 수정의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107페이지 보시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 이런 쪽으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정도면 서로 업계에서도 공감되는 그런 수준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우리 국토위에서 논의하는 법들은 대부분의 법들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정비법에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94페이지 보면 조합임원 해임 등 요건 강화라고 해 가지고 조합원 중에서 임원들에 대한 해임

요건을 조합원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총회를 열어야지 그것을 2배나 더 강화시키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조항이 아니고 조합임원을 위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조합을 꾸려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를 해야지 조합 임원의 이익을 보호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 임원 해임 요건 강화는 반대합니다.

로마 천년의 세법이 딱 세 가지입니다. 10분의 1, 40분의 1, 25분의 1입니다. 이 요건을 지금 10분의 1로 돼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이걸 두 배를 강화해서, 또 뒤에는 100분의 10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0분의 1과 100분의 10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통일이 되고, 법이라면 대저 누가 읽든지 명쾌하게 납득이 돼야 됩니다.

저는 94페이지의 총회 소집 요건 강화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한 게 아니고 조합 임원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7페이지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의 과반수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합니다. 우리가 민법상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행정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요건을 두 번이나 강화를 시켜 버리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만들 때는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에 있는 조항은 행정법에 중언부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법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금지는 이미 민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지 이 특별법에 가까운 행정법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중언 부언하는 것은, 100페이지입니다. 그게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의 토지소유자 숫자, 몇 명이나 하는 이 산정기준일이, 조합 설립할 때하고 사업계획 인가 등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행위에 그 기준이 딱 맞으면 되는 거지, 그 행정행위의 기준하고 관계없이 또 다른 숫자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알박기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 설립할 때 알박기를 하는지 아니면 사업계획 인가를 할 때 알박기를 하는지 사업계획 인가 후에 알박기를 하는지 그것 단계별로 어떤 때 알박기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원의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소유권이라는 것은 로마법 이후의 절대권입니다. 한 명의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여러 명이 됐을 때 한 명의 토지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게 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민법 논리상 그것은 간주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 행정법·민법의 논리에 배치돼 가지고 이런 조항을 넣는다 해서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이제 대충 위원님들 의견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발의하신 100쪽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천준호 위원 예, 100페이지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민법으로 보통의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당한 허위 광고를 하면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잘 작동이 돼서 현재 재개발 현장이나 정비사업 현장에서 적용이 된 사례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할 텐데,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표시·광고라든지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홍보물·광고물에 현혹돼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의사표시나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못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갈등을 겪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갈등을 겪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도정법 안에 그런 조항을 이제 만들어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거치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왜 안 되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사실상 조합이 그 기능을 다해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는 조합이 그냥 조합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예를 들면 조합장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그리고 조합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것이 언론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서울에만 100여 개 정도 전국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지 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조합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개정안에서는 ‘조합 해산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집한다고 해도 총회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을 했어야 될 조합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고 또 총회를 운영해 나간 집행부는 그 조합을 계속 유지·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악용해서 총회를 소집만 하고 사실은 총회가 성사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을 못하게 됨으로써 이 조합이 계속해서 잔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니까 수정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한다’로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익 위원님, 다만 87쪽 같은 경우 수정의견 5항과 6항도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해산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해서 해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합 해산할 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이런 조합도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천준호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 조합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임의 조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아니면 이 부분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앞의 부분에서 그것이 안 되었

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강행규정으로요?

○천준호 위원 예, 만약에 앞의 부분을 보완한다면 뒤에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천준호 위원님, 개정안 원안은 ‘1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해산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1년이 지나서도 조합이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천준호 위원 일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산인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맡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서 굳이 조합과 조합 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비용을 주민들이 지출하게끔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지금 너무 많으십니다.

○홍기원 위원 만약 그런 취지라면 굳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해산을 의결한다고 두지 말고 그냥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렇게 두는 게 타당하지.

○천준호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총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회를 해산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합을 넣은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산에 대한 것을 집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을 뒤에 추가로 수정의견에서 넣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그런데 조합도 법인격이 있는 거지요?

○천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렇지요? 법인격이 있는 거지요. 법인격이 있는 건데, 어쨌든 명목상의 조합이기는 하지만 법인격이 엄연히 있는 건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그냥 자체

판단으로 임의로 법인격을 말소했다가 나중에 생길, 99개가 잘 돼도 1개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오히려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 비송사건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준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건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공사비의 20%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지금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삼 년 전에 한남지구 거기에 4개, 3개 건설업체들이 부당한, 과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새로 입찰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건설업자들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를 부과한다거나, 큰 규모는 공사비가 2조, 3조입니다. 거기의 20%면 과징금 6000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 정할 사항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할 사항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고 입법이라는 것은 행정지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법마다 이렇게 과한 처벌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100페이지의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사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걸 지나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천준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천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도정법에 보면 뇌물 수수 등 이런 것 관련된 처벌조항이 그렇게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질서를, 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사안이라고 봐 가지고 기존의 도정법 안에 있는 처벌 기준에 맞춰서 벌칙 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일단 과징금 적용은 좀 배제하는 건 어떨까요? 우선……

○**김교흥 위원**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까지만……

○**소위원장 조응천** 예, 과징금 적용을 일단 배

제하시고요.

○**김교흥 위원** 공사비의 20% 과징금은 내가 봐도 좀 과해요, 과해.

○**천준호 위원** 과징금 부분은 그런 말씀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리고 지금 허위과장 광고 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하다는 취지의 김희국 위원님.

○**김교흥 위원** 아니, 김희국 위원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까지 하는데 과징금을 20%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한 것 아니야?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과징금만 좀 배제하면 되겠습니까?

○**金熙國 위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이미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도 있고 수많은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 행정법에 굳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여러 사업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을 준용해야지, 개별법에 이렇게 과다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고, 이 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천준호 위원**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사가 제출했던 최초의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주민 갈등이 생기고 그 부분 때문에 조합이 고발도 당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건설사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과당한 경쟁을 하게 되면 부정한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고에도 사실은 선을 넘어서 애매하고 논란이 될 광고를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건설사들도 가뭇돈이나 비자금 이런 것 조성하지 않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우리나라 1군 업체, 최상위 도급 순위 1위의 임원하고도 제가 이 문제 갖고 같이 토의를 해 봤는데요. 거기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건전한 재개발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나 예를 들면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법안을 같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복마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재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차관님, 혹시……

○소위원장 조응천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맛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혹시 민법상에 여러 가지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여러, 또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주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처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업계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서 처벌되거나 징역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현재는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장경태 위원 개별입법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개별입법에 따라서 적용되는데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산법 준비하면서 봤던 게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도요 금융위원회가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한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도 법정 최고액을 100분의 5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거기의 기준이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혹은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 이상인 경우나 내부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으로 금융 관련된 법은 상당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즉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나 이 법도, 지금 자본시장법 대단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도시 정비법도 활성화를 위한 법인데 거기에 대한 위반행위나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는 강력하

게 제재하는 게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금융업계에서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계에서 이것을 못 할 이유가 혹은 개별입법으로 민법상 다 위임해 놓고, 그렇게 따지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든 뭐하러 합니까, 개별입법?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해당 행정법에 명시를 해야지만 그나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입법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다 민법에 위임하면 됩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불법행위가 나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벌칙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타 법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자본시장 금융투자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고려해서 과징금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입법사안에서 여기 굳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이것은 당연히 불법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도 저는…… 그래서 굳이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 관련된 입법처럼 건설법도 좀 더 선진적으로 저는 명시하는 할 필요 있다, 과징금의 수위를 하다못해 5%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명시하는 것도 큰 입법 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4호에 ‘비방적인 표시·광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자기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한다,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지요?

○천준호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타 업체와 관련해서 시공 능력이라든지 과거의 다른 재개발건축 사례에서 어땠다라든지 이런 식의 비교 하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방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홍기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준호 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전문위원께서 내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지고 수정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자,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하지요.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도정법 제일 앞이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54쪽. 54쪽부터인데 지금 94쪽하고 97쪽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임원, 조합 측을 위한 것이라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천준호 위원** 54페이지가요?

○**소위원장 조응천** 94와 97에 대해서……

○**홍기원 위원** 앞의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니까 앞에는 별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앞에서는. 그렇지요? 의견 주신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94와 97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게……

○**홍기원 위원** 100페이지, 101페이지.

○**소위원장 조응천** 예, 100쪽. 100쪽의 부당한 표시·광고, 이것은 과연 그러면 민법, 일반법으로 규정하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민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김교홍 위원** 명시조항이 과도하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으로 해주는 게 맞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민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이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과징금은……

○**소위원장 조응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분만 좀 들어내고……

○**김교홍 위원** 이중처벌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응천** 일단 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김교홍 위원**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시공사 선정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가……

○**장경태 위원** 저는 과징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고 해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법적 이익이 비교형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판례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례도 어찌 됐건 과징금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형태로 나갈 가능성은 매우 저조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교홍 위원** 아니,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또 과징금을 20% 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중처벌인데……

○**홍기원 위원**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김교홍 위원** 그리고 공사비 20%면 엄청난 거예요, 공사비 20%.

○**장경태 위원** 5%라고……

○**김교홍 위원** 아니, 공사비의 20%면 엄청 큰 거예요.

○**홍기원 위원** 공사비의 1%도 엄청 클 수 있어요. 1조 원이면……

○**장경태 위원** 이게 범위니까요. 이하 내에서……

○**김교홍 위원** 물론 이하인데 이것은 너무 큰 건데, 20%면.

○**소위원장 조응천** 과징금만 좀 들어내는 것으로……

○**김교홍 위원** 그래요, 과징금만 들어내지. 천 위원!

○**천준호 위원** 예.

○**김교홍 위원** 과징금만 들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천준호 위원** 예, 들어내시지요.

○**김교홍 위원** 이것은 개별법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희국 위원님, 민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金熙國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아까 우리 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심사 할 때마다 계속

처벌 강화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처벌과 강력제재로는 문제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처벌과 강력제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이것은 일단 계속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09쪽 조오섭 의원안,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예.

○소위원장 조응천 작년 12월 달에 그때 저희가 한번……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심사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심사했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예.

○소위원장 조응천 그때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그때 저희가, 110페이지 보시면 검토보고……

○소위원장 조응천 예? 몇 쪽?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110페이지.

○소위원장 조응천 110쪽.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원래는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숫자 산정에 있어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두는 것은 저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회의가 열리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밑에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또 국토교통부의 의견 플러스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수정의견 1·2로 나누어서 수록을 해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런데 지금 이게 소유자가 중요한 요건인데 법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기준일을 정하는 겁니까, 숫자를 정하는 겁니까, 이게?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기준일을 정하는 겁니다.

○김교흥 위원 사업시행 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걸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의견 1……

○소위원장 조응천 수정의견 1로 그냥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경태 위원 1이든 2든 차관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소위원장 조응천 동의하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마는, 저번에 한 번 심의를 했고 또 부처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인 모양입니다.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영한 예, 주택정책관 나와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안이 더 좋을지 2안이 좋을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영한 수정의견 1로 할 경우에는 알박기 방지라는 입법 취지 측면에서는 수정의견 1이 더 효과적으로 보여지고 수정의견 2는 중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정의견 2가 좋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金熙國 위원 이 법을 제안한 것은 알박기 방지법이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金熙國 위원 그러면 1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수정의견 1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견을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번 정리를 할까요?

○천준호 위원 잠깐 한 말씀 좀……

○소위원장 조응천 예?

○천준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계속심사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이것은, 최근에 서울지역에 재개발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기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시공사 선정 과정 그리고 정비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이라고, 다른 법으로는 그것을 규제하기가 힘들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뭔가 규제가 있었던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예방 효과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처벌 위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처벌 조항을 빼고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넣어 주시는 게 어떤가, 정말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金熙國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처벌 조항 빼고요?

○金熙國 위원 예.

○김교흥 위원 과징금 그 안에.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과징금 말고 징역도 빼고.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금이라도? 예를 들면 그것은 행정행위로 하는 거니까 처벌 조항을 빼 주시면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이 취지가 좀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소위원장 조응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그러면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에 과태료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법문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구 수정은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제34항, 제3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1)

(15시41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소위 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 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여가생활 및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로 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 사업 중에 일부 도로·공원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목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도 체계적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의 훼손지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다·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되고 있으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른 면적은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존치 면적의 제외 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훼손지 복구에 따른 면적과 보전부담금 산정 면적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기준 면적이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 면적보다 과다하게 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보전부담금을 통해 훼손지 복구계획을 이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에서의 훼손지 복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없더라도 물건이 적치되어 실제로 훼손되어 있고 생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현행 규정상 훼손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훼손지 복구대상 범위를 건축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구역을 광역계획권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 훼손지 복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기준을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전부담금의 납부액이 작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전부담금의 산정 요율을 상향하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동의합니다.

○김교흥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동만 위원님 좋은 법 내 주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

(15시46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감리원의 자격에 대하여 위임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수정의견은 17페이지에서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건축정책관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할 건축물의 범위를 공공건축물하고 민간건축물로 나누었을 때 민간건축물도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민간건축물도 포함됩니다.

○金熙國 위원 민간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감리원의 자격이나 경력 문제가 아니고 감리비를 안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도 1년, 12개월 동안 감리비용이 평균 몇 개월 나오니까? 기재부에서 감리비 산정할 때, 겨울은 동절기고 공사 타절 기간은 감리비가 안 나오고 있지요? 지난번에 광주 5층 노후 건물 도괴 사건도 감리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감리비를 안 주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을 제안한 것 같은데 감리자의 자격을 정하기 전에 감리비를 어떻게 줄 건지가 훨씬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동의는 합니다. 마는 현행 법률에 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상주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문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熙國 위원 감리원 배치기준은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문제는 감리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설계하고 감리할 때 설계업체 너네 보고 감리 같이 하라고 하고 있지요? 민간건축물의 경우에 설계와 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설계업자가 감리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해체공사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실제 건물을 해체하는 건물주가 감리비를 정상적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그것은 실태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熙國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맞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법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설사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제시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집행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감리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감리원의 자격 따위가 아니에요. 감리비를 안 주고 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감리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담당 국장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소위원장 조응천 제가 아까 모두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속기록 작성을 위해 가지고 배석하시는 분들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소속·직위·성명을……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엄정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실국장님들 앞으로 소속·직위·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 감리비용 안 주는 문제는 안 주는 문제대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

이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입장?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원 위원 여기 앞의 1항, 2항을 제가 못봐서 그런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하고 거기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해체공사가 아니고 일정 규모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맞습니다.

○홍기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현재의 법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주토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감리 실태가, 이렇게 명문 규정이 없으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재 감리 제도 운영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어요?

사실 과거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정말 이런 사회적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감리 제도를 계속 다듬어 왔는데 이런 중요 공사 현장의 상주는 기본 아닌가요?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가 과거부터 있었고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상주감리 제도가 없었고 작년엔 상주감리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상주감리 도입 근거를 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그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법률이 개정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해체 규정이 명문에 들어가서 더 명확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체공사의 경우는 어쩌면 신축현장 못지않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붕괴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해체공사 기간 동안에 상주감리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이게 아마……

○송석준 위원 꼭 이렇게 명문 규정을 넣어야 되나 이거예요. 그동안의 감리 제도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중요한 공사 현장에는 당연히 감리가 배치돼야,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중에?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상주감리 제도는 작년엔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것은 상주감리 근거를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화하는……

○송석준 위원 오늘 이원재 1차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해체 현장에서 사

고가 난 직후에 바로 또 같은 회사에 의해서 같은 도시 내에서 신축현장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신축현장은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이없이, 감리제도가 이렇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의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법을, 규정을 강화한들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차관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규정을 만들고 강화하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들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특히 윤석열 정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결과를 보여 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시작했잖아요. 어떤 각오로 이렇게, 지난 정부 정말 문제인 정부와 달리 어떻게 할 건지 그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감리제도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제도가 정말 현장에 정착돼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특히 그것 지자체에 많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 권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시스템을, 좀 더 운영 시스템을 강화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지자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또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단서 조항 있잖아요. 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단서 조항이 아닌 본문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는 이런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지금 현행도 두고 있습니다. 현행도 두고 있는데, 다만 이번 것은 하위 규정은

아니고요. 법률에만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도 규모에 따라서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다 되셨나요?

홍기원 위원님은 앞으로 발언권 좀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법안 심사할 때도 발언권을 얻나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홍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취지에는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수정 의견대로 처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397)

(15시57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홍기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사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높은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의무가 없는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건축허가 면적의 비율이 높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파악 및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

축허가 면적 및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부칙, 시행일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님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金熙國 위원 여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현장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써 놔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 근무 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일단 자격은 건축사나 기술사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되면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 봉급을 받고요.

○金熙國 위원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부담이 지자체장입니까, 국가가 지원해 줍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자체장인데 작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없었고요. 금년에는 예산을 20억 확보했고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정부가 필요한 소요 예산을 다 지원한다는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일부 지원이 됩니다.

○金熙國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 지자체의 입장, 89개 가까이 되는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공무원들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보지 못하게 한 관계로 현장의 공무원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를 보완하려고 하는 이 취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국가, 공사나 공단,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과연 이 업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때문에 못살겠다. 도대체 그 많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지난번 광주 5층 노후 건물 도괴 사건 때도 광주 시 동구청 건축과에 직원이 몇 명인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내리느냐’, 이게 지자체장과 지자체의 기본적인 불만과 어려움이예요.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 인구 한 45만 되는 시도의 경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근무해야 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그거는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둔 게 아니고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직접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인구 50만의 경우에는 보통 몇 명 근무합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현재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41개인데요. 지금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데 5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금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입법화되면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사실 이게, 지역안전센터 도입이 초기 단계고요. 제가 볼 때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채용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100% 다 완전하게 운영될 수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좀 이 부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규모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보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金熙國 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일반 공무원 건축과, 주택과처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

니까, 아니면 권능이 있는 책임부서의 보고나 지시를 이행하는 단순 보조 기능만 합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금은 저희가 지원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거기에 보조 인력들을 두고요. 그다음에 직접 허가 담당 공무원이 같이 배치돼서 그 부서에서 인허가를 다루는 데도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교홍 위원님.

○김교홍 위원 국장님,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이게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대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의 안전 문제 또 부실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맞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현재는 재건축을 들어가려고 하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들어가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김교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D등급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후화돼 있는데 거의 D등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D등급 이하, 이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건축정책관이고요. 그것은 주택부분의, 부서가 좀 틀려서……

○김교홍 위원 차관님한테 여쭙 봐야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재건축 관련해서 일부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김교홍 위원 이게 차관님,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나 공공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또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아주 노후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현행법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조만간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어떻게 수정 의견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934)

(16시04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 정의 규정에 경관자원과 중점경관구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조항에서 경관자원 및 중점경관구역과 관련한 각종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 뜻을 명확히 하여 정의 규정에 이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한 중점경관구역으로 수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3조의3제1항 같은 경우를 보면 주요 경관자원이 있거나 조망적 가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개발행위나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한 경관 변화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이렇게 ‘관리’라는 일정한

시·도지사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고시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관계획의 수립 기준 등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고시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관계획의 수립 기준 설정 시 이미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관에 관한 소관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앞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4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할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관계획 수립·시행 시 시·도지사가 필요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수립·시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등이 경관자원에 관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경관자원 조사·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현행법상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 등이 경관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관할 구역의 경관자원의 발굴을 위해 조사·평가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관자원이 있거나 조망적 가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부재한 중점경관구역과 관련한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규정하는 한편 중점경관구역의 상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구 정리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수정의견은 41페이지에서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경우 중점경관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경관구역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사업 시행 또는 경관협정 지원 시 중점경관구역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개정안이 수록되어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현행법상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한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사회기반시설 중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도로, 철도시설 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 시설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이후 개발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심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5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개정안 4호와 같이 추가하는 한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현행법령상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만 대지조성 후 별도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경관법의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이 건설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을 건축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개정안 제1항 2호의2, 2호의3과 같이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중점경관 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그리고 상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추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62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 활성화 시책의 발굴 등 원활한 경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보면 원활한 국토경관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 경관정책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등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경관정책 추진을 위해서 경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관심 제고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관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67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등 원활한 경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을 광역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경관지원센터의 운영만으로는 전국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 정책이나 제도 운영 및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고, 광역경관센터 지정 및 운영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자체 경관행정 역량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자구 정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70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님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金熙國 위원 성명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건축정책관 엄정희입니다.

○金熙國 위원 경관법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연도로는 정확히는…… 2013년 정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때 본 위원은 경관법 제정에 극력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8~9년이 지났는데, 경관법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금 10만 이상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위원 이 경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경관 심사 위원들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체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이것은 지자체 경관관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지자체장들은 경관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만든 경관계획을 국토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일단 이게 수립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립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본 위원님의 질문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이, 또 국토부가 지자체장에게 요구를 했으면 그 경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이 됐는지, 아니면 수립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어떻게 보완하라는지 심사·조정해서 이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돼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요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저희 국토부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해서 그쪽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쪽 연구원을 조인해서 사실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질문의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말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몇 개 지자체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

○**金熙國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는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수많은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리고 수많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래 놓고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대한민국은 위원회하고 센터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국토위에서 법 한 줄이 결정이 되면 지자체에는 의무와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국토부도 의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보고 의무를 부과를 해야지. 국토부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요구하는 계획 수립만 수십 가지예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金熙國 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도저히 소화를 못 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하거나 안 하거나 또 용역 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계속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관계획을 만들게 되면 아까도 도로나 특정 사업을 할 때는 경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6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를 하지요.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 하면 수십 가지 협의나

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런데 또 경관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고 비용이 얼마나 더 들고 시간이 얼마나 더 드는 건지 사무관이나 과장들이 한 번이라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이것은……

○**金熙國 위원**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거나 시행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경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경관법의 취지가 어찌 되었건 너무 일색에 찍어 내는 듯한 도시 구성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별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혹시 우수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저희가 매년 우수 사례에 지자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우수 사례가 어떻게 좀…… 우수 모범 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전파되거나 여러 귀감이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물론입니다. 회의도 하고요. 보도자료 배포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제가 경관법을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90년대 후반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 경관사례집을 만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관 개선을 위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만들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게…… 경관법제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이 경관계획과 다른 도시계획법제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호 관계를 갖고 있지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과 경관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지금 이 법에서 국토계획법상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하고 유관이 명확히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그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행정계획이고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경관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일종의 규제지요. 규제인데, 건축 계획도 계획이고 그것도 또 일종의 규제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요즘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상 상세계획이라는 말은 요새 없어졌나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없어졌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계획이 나오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예.

○**송석준 위원** 거기에 경관계획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거기에는 없고요, 옛날의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혹은 도시관리계획 레벨로 국토계획법에 있고요.

○**송석준 위원** 도시설계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상세계획이 합쳐져서 지구단위로 이것을 가지고 오고……

○**송석준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됐지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엄정희** 국토계획법에 있고 이것은 경관법에 따로 규정돼 있는 계획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이 많다고 해서 과연 우리 경관이 법이 많아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졌는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단순한 법제 내에서도 경관이라든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섬세하게 담아 주고 그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현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원재 차관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국토교통부 법제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광주 사태가 말해 주잖아요, 광주 해체 과정에서 붕괴 또 신축 과정에서의 붕괴.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이미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엄청난 규제, 제도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계속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사회가 성숙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규제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능사인가? 한번 좀……

그래서 이왕 이번에 이원재 차관님 새 정부의 초대 차관으로 우리 국토부차관 되셨으니까 규정을 자꾸 만들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규정 중에 좀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또

무슨 장식물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 규제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보면 법제의 기본 흐름이 이거예요. 무슨 기관, 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처벌규정 강화해요. 그러니까 뭔가 위인설관의 기관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가 안전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사회의 기능이 얼마나 효율화됐는지 또 얼마나 쾌적성이 증가했는지 이것을 돌이켜 보면 잘 실감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섬세하게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공공기관이 센터니 무슨 원이니 이런 이름으로 생겨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은 많이 들어가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규제는 자꾸 중첩돼 왔는데 실제 결과로는 우리 국민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 규정을 보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런 좋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면 굳이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안 하고도—특히 경관 같은 것은요—우수 경관 이런 사례를 갖다가 표창하고 널리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해주면 굳이 중복규제 이런 것 많이 안 만들고도 우리 사회의 경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광역경관지원센터, 우리가 좀 전에 논의한 것도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잖아요. 센터, 센터 자꾸 만들어 봤자 이분들 세금으로 돈 쥐야지요 또 이분들 일거리 찾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맨날 규제하고 간섭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법안 문제도 우리가 경관 개선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법률과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만이 능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우리 1차관님 주재로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총괄적인, 새 정부 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제도들을, 규제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통합 또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관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위원님 그 말씀

취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경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출발하게 된 것이 우리 도시가 너무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경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경관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고를 하고 또 경관계획도 경관상세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경관적인 요소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고 또 경관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SOC 시설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경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제가 인천경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관법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도 해 보고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도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상세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경관상세계획에 맞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계속 유도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경관적인 측면에 있어 수준을 높이는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법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도모하면서……

○소위원장 조응천 정리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우리 조응천 위원장님과 주택·건축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제도가 정말 시급하게 빨리 쾌적하고 정말 제대로 된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건축물이 신속하게 또 쾌적하게 정말 안전한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종 제도들이 중첩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게, 심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결국 나중에는 결과물은 비용 대비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 재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거시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담아주면 되고요. 경관 전문가들이 거기 한 파트로 참여하면 됩니다. 또 건축계획을 할 때 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건축계획에 경관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거기에 넣어 주고 거기에 담아주면 돼요. 그것을 별도 법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다른 법으로 만들어서 또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 비용만 많이 유발하고 시간만 많이 유발하지 결과에 좋은 건축물 경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명심을 해 주시고.

○소위원장 조응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간단하게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가 뭐니까? 경관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중점경관구역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더 하자는 거예요? 뭐니까, 초점이?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심상정 위원 경관이라는 것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어떤 철학과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리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파리 건축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갖는 앞면 이것은 손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국가적 규제를 하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개발논리에 부정되고, 오로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개발논리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경관중점관리구역 하나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너무나 결가지로 처리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중점경관구역이라는 그 개념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원칙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갈 건지 또 주민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집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집 없는 분들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될 어떤 공공적 자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경관구역으로 결가지로 만들어서 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 인식이 처음부터 좀 컸고요.

게다가 여기다 지금 개정안이라고 낸 게, 관리지 그러면 관리가 아니면 뭘니까? 그다음에 그런 경관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부처 장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국토부장관만 고시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결가지로 더 편법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도 들어섰는데 이제는 시대 변화를 담는 그런 도시전략, 도시계획 이런 데 대한 가치가 담긴 비전을 내놔요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시작된 지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99)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허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1년 2월 18일 날 소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할 때 공공건축의 친환경적 조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78페이지의 수정의견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 공공계획가’라고 하는 용어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가와 용어 혼동 문제를 말씀하셔서 신설을 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8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께서 공청회 하셨을 때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셔서 그것을 88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10년 단위로 지역 공공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기본계획 수립 주기하고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립 주기를, 현행 개정안을 10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키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총괄건축가 등의 명칭에 관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의 조항을 신설한 바가 있고요. 104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104페이지에서부터는 공공건축 총괄계획가와 그 다음에 공공건축 공공계획가라고 하는 두 개념을

신설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중요한 내용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경력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30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건축사 경력 제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제정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주셔서 136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지난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키워드는 공공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81페이지에 이번에 가져온 것 보니까 공공건축 총괄계획가, 공공건축 공공계획가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변호사, 기술사, 의사, 박사 이런 용어는 국토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85페이지에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고 91페이지

에 또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런 계획 수립을 의무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지요.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시·도지사한테 계속해서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건축 공공계획가’를 법 중에 넣지를 않고 11조에 이렇게 뒤로 빼 가지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5년 이상, 조정기술사로서 5년 이상,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서 경험 있는 자’, 시험도 안 친 부교수가 어떻게 공공건축 계획가가 됩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야 할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유보 위반입니다. 이 법은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류시키고 다음에 다시 검토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의하면서……

차관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법이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공공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합화인데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하나의 공공건축을 짓거나 할 때 이것을 복합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여러 지자체가 같이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는 아까 나온 공공건축 총괄계획가 등을 통해서 공공건축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공공건축에 관련되는 것을 좀 더 하나로 통일했다는 그런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현행법 가지고 시행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도 많은 부분들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희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기원 위원**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홍기원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련의 법안을 보면 전부 다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건데 사실 시대의 흐름은 지방자치 강화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경관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조성할까 또는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들은 어떻게 하면 개성 있고 특색 있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도록 가야 되는데 진짜 5년 계획, 10년 계획 수립하라고 하면 사실 계획 수립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들 텐데 보고받는 또는 지시하는 국토부나 또 상급기관에서는 사실 그것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국토부에서, 저는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너무 획일적으로 또 비용 절약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로 경관이나 또는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보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중앙에서 다 지침 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획 세우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가지고 비슷한 의견이시면 좀……

○**김교홍 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교홍 위원** ‘공공건축 총괄계획가’, ‘공공건축 공공계획가’, 이 명칭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괄건축가라든가 이게 필요해요, 지역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공공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도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단순히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지역에서 이분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우리 국토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지요, 지자체에?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는 인건비 1

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1억 정도.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 주면서,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만 가지고 지역의 경관이나 도시환경이라든가 건축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는 해박할지 모르지만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조경 또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은 좀 바꾸더라도 이취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전반기 우리 국토소위 법안심사 마지막 날짜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특별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5)

(17시01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익**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건축규제 완화 없이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건축완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건축법상의 대지의 조경이나 접도조건, 건축선의 지정,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노후 불량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접도조건이나 건축선의 지정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방차량 진입 등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등이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에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타당합니다만 이미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기금의 경우에도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이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개정안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홍정민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대해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의견 제시를 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매각 또는 양도 금지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으로 한정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매각 또는 양도 금지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해당 국·공유재산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용어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현행 '매각' 또는 '양여'에서 '처분'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규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등을 기준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의 지연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또는 ‘양여’라고 하는 용어를 국유재산법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평가에 대한 사항도 현행 ‘매각’에서 ‘처분’으로 규정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협의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협의대상과 실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토 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 예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준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건폐율 완화 규제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안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나 입주자 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주거재생혁신지구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유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완화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입니다.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지방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7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례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 제30조는 활성화지역 내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규제 완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부분은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한 후 6개월 정도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金熙國 위원 5페이지 검토의견은 국토부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소방차량 진입 등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앞으로 표현할 때는 능동태로 써주세요. 배배 꼬아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쓰지 말고 이걸 안 된다, 국토부에서 안 된다 했는데 내가 봐도 안 된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金熙國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앞에 헤드라
인은 뭐냐 하면, 1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 규제를 완화해 가지
고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
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런데 15페이지 30조 보면 ‘도
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
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이
렇게 반대로 기술해 놨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金熙國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취지
를 따르게 되면 국·공유재산은 이러 이러한 경
우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법령
상 맞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
고 보여집니다만……

○金熙國 위원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도록, 법률
표현에 있어서 능동태로 쓰는 것하고 수동태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매
각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검토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이 똑같다면.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자구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쪽의 수정의견을 능동태로 다시 자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

(17시13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
구하고 대학 교지의 일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대
학 교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대학이 산학연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
행자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기업 입주 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3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개정법률이 교지에 대학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례는 규정하
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예외는 명시하지 않아서 국공립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
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부 자구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34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金熙國 위원 31페이지의 중단에 ‘영구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써 놔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대학교 땅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개정안을 한번 봐 주시면 대부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 소유권은 축조한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영구시설물에 대한 매각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팔아먹어도 되나 이런 질문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그 부분은 일단 이미 양쪽이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해서 팔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熙國 위원 소유권의 경우에는 땅 주인이 아니고 소유권 사업시행자 권리인데 그러면 법적 성격은,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쌍방 합의에 의해서 매각·사용·수익·처분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쌍방이라는 게……

○金熙國 위원 쌍방이라는 게 토지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지 중의 일부를 허용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토지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는 것까지 임대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한테 매각은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熙國 위원 이 부분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을 정교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상의 국유 부지에 시설물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권만 허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 기부채납하든지 귀속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똑같은 성질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매각을 포함한

사용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은 말은 영구시설물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용주체에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이율배반적 조항이에요. 나중에 한번 따져 보세요, 이것.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 운영중 예, 산업입지정책과장 운영중입니다.

○金熙國 위원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 설치권을 획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고 매각권을 부여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 운영중 일단 설치를 하고 매각권은 부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것은 정부가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리의 성질이 사용·수익권이나 소유권이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왜 영구시설물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뒤에 보면 나중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 운영중 예, 맞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영구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성질에 대한 기술이지 권리에 대한 기술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장 운영중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9)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3)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057)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덕**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청이 건설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을 모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하실 때 현행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64.8%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매각이나 무상 양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강준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청이 건설하는 119특수구조단 등 공용·공공용시설물에 대해 세종시 또는 세종시교육청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양여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들을 별표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시설물 중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어 이를 별표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정진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통령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통령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어 개정해야 된다는 현재의 결정이 있었던 점을 참고해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정진석 의원님·강준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복도시로의 이전 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이전 계획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상위 기관인 대통령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다시 대통령이 승인하는 등의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4페이지에 제시해 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 의견은 41페이지와 4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37페이지, 그 이야기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1번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교홍 위원님.

○**김교홍 위원** 44쪽의 제16조의2 수정 의견, 거기에 보면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을 넣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세종이요? 어디요?

○**김교홍 위원** 예, 44쪽에.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세종’이라는 글자를 어디다 넣습니까?

○김교흥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소위원장 조응천 세종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김교흥 위원 구체화시키자는 겁니다.

○金熙國 위원 여기서 집무실이 세종 안 가고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조응천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이……

○김교흥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딱 세종을 지칭하는 거야?

○소위원장 조응천 세종 말고 지금 어디 있나요?

○김교흥 위원 앞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김교흥 위원 향후는?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게 또 제2의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국회도 보면 세종의사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세종시에.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걸 쓰면 더 명확해진다 이 얘기지.

○장경태 위원 세종……

○김교흥 위원 세종의사당이라고 그래요.

○소위원장 조응천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우리가 여러, 광화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종청사 이렇게 장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종’ 정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은 이게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아직 위원 판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기능적인 측면보다 그냥 집무실이라는 드라이한 표현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이렇게 수정한 대로 하는 게, 다들 공감은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괜히 또 세종 무슨 집무실 하면 마치 조금 또 약간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이 원칙이고 그런데 내려갔을 때 거기서 집무를 잠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위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김교흥 위원 아니, 용산 집무실이 있고 세종 집무실이 있고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세종 의사당이 있고 이런 거지요.

○송석준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헌법학자들하고 얘기가 좀 됐습니까? 논의가 좀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그거는 행안부 측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이 법안 자체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블라블라블라 이 법이지요, 이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렇지요. 거기에 이 16조의 2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가요, 도망갈 데가 없는데.

○김교흥 위원 구체화시키자는 거지.

○송석준 위원 표현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수정한 대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이게 청와대 설치법, 대통령실 설치법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디 도망갈 데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용접을 딱 해 놔는데 이것 도망 못 갑니다.

○金熙國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조응천 그리고 37쪽, 이거 저번에 우리가 재작년에 논의했던 것, 이거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복청에서 지금 누가 나오셨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행복청차장 문성요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청장님이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장님이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소위원장 조응천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기재부에서는 매각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지 말고 현행대로 하자는 부분이고요. 6개 시설물 이관하는 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기재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하자, 매각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지 말고.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니까 의견 조율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개정안은 아닌 거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표 수정하는 것은 기재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오케이. 그러면 1번은 아니고……

○金熙國 위원 예, 1번만 빼고.

○소위원장 조응천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법명이 도대체 몇 글자야. 이렇게 긴데 도망을 어디로 간다고……

(웃음소리)

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

(17시30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미군과의 협상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 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부분 반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반환 부지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부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반환부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는 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할 국가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 의견은 55페이지에서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김희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53페이지, 용산 부지를 위탁할 전문기관이 어딴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

○金熙國 위원 담당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김복환 도시정책관 김복환입니다.

○金熙國 위원 용산 부지를 위탁할 전문기관이 어디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김복환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하면 LH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LH를 고시하려고 합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이 위탁받는 주체가 개발자네요? 용산 부지 개발 사업자.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김복환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LH입니다.

○金熙國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악산 기슭의 청와대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렸는데요. 용산

주변 지역이 그동안 과거에는 강가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과거로 말하면 도성 밖입니다.

도성 밖으로 외침을 받기도 쉬웠고 실제 외국 군대들이 역사적으로 주둔도 했던 그 비운의 또는 좀 많은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2022년 용산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침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 가는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한강은 더 이상 수해 공포의 대상, 과거의 도시계획시설로 원래 강은 우리가 재해·재난시설로 관리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한강이라는 소중한 자원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수변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시민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통해서 이제는 서해와 소통하고 또 내륙으로 소통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용산 지역은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세계와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소통과 개방의 공간으로써 이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터전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바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대통령집무실 시대,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터전이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보다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법 개정안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또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즉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 천준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지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통과돼서 용산 시대, 새로운 국민들과 소통, 세계의 웅비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17시36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날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박물관단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자료 제공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다른 박물관 관련 법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60페이지의 국립박물관단지 사업 개요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목적 조항입니다.

목적 조항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조응천 위원님과 홍기원 위원님이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고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시설’이 아닌 ‘조직’으로 자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두 명인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립해양박물관법에서는 상임이사를 한 명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는 상임이사를 두 명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나 사업 연도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차입금과 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의 특성상 공적인 기능의 성격이 강해서 자체 수입만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입니다.

국가 소유 박물관 자료의 위탁·관리와 지원센터 이사장이 외부기관에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의 내용입니다.

이사장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건설청장이 지원센터의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는 박물관장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파견 요청 기관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여 조직 운영이 방만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73페이지를 보시면, 새만금간척박물관 설치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소위 심사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을 자제하고 민간전문가에 한정해서 파견을 하도록 법률안 수정이 된 것도 감안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90페이지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비밀엄수의무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벌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자료 제공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다른 박물관 관련 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항공박물관법이나 국립해양박물관법에서도 자료 제공 요청의 규정만 있을 뿐 자료 제공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립 준비나 물품의 무상양도, 직원임용의 특례, 지원센터 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및 운영법인 설립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행복청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물품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운영과 관련된 물품에 한정해서 무상으로 센터에 양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金熙國 위원 대한민국은 위원회, 센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박물관까지 추가돼서 세 가지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계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행복청 차장 문성요 나와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영국의 대영박물관, 소련의 에르미타주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어떤 세계적인 박물관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박물관을 4개를 연결해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전대미문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우리나라 최초로 박물관단지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주체를 센터로 하는 건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스미소니언 운영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 박물관섬 같은 경우도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센터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공공입니다.

○**金熙國 위원** 공공인데 이사회를 구성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만 해도 4000억 넘게 드는데 연간 개략적인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초기 한 5년 동안 볼 때 연간 한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연간 순수 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원칙이 무료이기 때문에—일부 유료도 있습니다만—그래서 정부에서 출연을 받아서……

○**金熙國 위원** 그러면 그 운영경비나 내장품이나 큐레이터나 학예사 등 소요 경비는 국비로 합니까, 세종시가 부담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국비로 정부에서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러면 그 출연하는 금액은 매년 소진되겠네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큐리어스(curious)합니다.

72페이지,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은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박물관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저희……

○**金熙國 위원** 지난번 새만금에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일을 해야지 박물관에 가면 되겠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다른 의견……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장 1명, 상임이사 2명 해서 상근 3명이네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소위원장 조응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이사장은 전체적인 박물관단지의 총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 부분과 학예 부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 부분은 전체 박물관 시설 관리라든지 박물관 협업 사업하는 것이고, 학예 부분은 어린이체험관하고 수장고에 대한 전시·교육·연구를 담당하도록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도 각 한 분씩 두 분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무료로 운영되고 사실상 전액 국고로 충당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소위원장 조응천** 쉽게 얘기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은 외부적으로 대표하고 매출을 담당하고 상임이사는 안에 살림 살고 그러면 됐지 상임이사가 들썩이나 필요하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아니다’라고 해서 부득부득 그냥 계속 오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응천**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겁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응천** 뭐 이래 나누고 저래 나누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뭐 꽃보직 늘려 주려고 지금 이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저번에 말씀드렸다고요. ‘상임이사가 왜 두 명씩이나.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 또 계십니까?

김교흥 위원님.

○**김교흥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언제 준공해요? 올 연말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어린이체험관하고 수장고는 연말에 하고요. 박물관들은 27년까지 이제 연차적으로……

○**김교흥 위원** 이게 통합운영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박물관하고 어린이체험관, 수장고, 주차장,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체험관, 수장고, 주차장.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올 연말에 준공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내년에 개관을 못 하는 문제가……

○**김교흥 위원** 개관을 못 하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박물관이 지어져야지 거꾸로 돼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항상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위원님, 그 부분에……

○**김교흥 위원**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법’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길어, 법명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명이 길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법’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안 될까요, 수석전문위원님? 법명이 너무 길잖아.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수정하셔도 되는데 여기

에서 핵심 포인트가……

○**김교흥 위원** 통합운영지원센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예, 통합……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뭐 국립박물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 저 발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응천** 예.

○**홍기원 위원** 그 제목 지금 김교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국립박물관단지법 앞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법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응천** 말씀 다 하셨습니까?

○**홍기원 위원** 이름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법 이렇게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발생할 문제는 없고 다만……

○**김교흥 위원** 자꾸 이게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야. 법명은 크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법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국토부 법인데 국립박물관단지법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좀 걸끄러워 해서 그런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제일 함축적으로 담아 내느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고 하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든가. 그래요.

○**홍기원 위원** 그거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장님, 아까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비슷하게 될 자신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국립박물관단지가 대한민국에 정말 내놓을 만한……

○**소위원장 조응천** 진짜 기원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거기는 고가의 입장료 주고 들어가요. 줄 서고 들어가고 예약해서 들어가고

거기는 돈을 벌니다, 벌어요. 그저 꿈만 크고 말쑥만 광오하게 하시면 다가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현재 예상하는 직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금년에 임시로 3개월 정도 생각해서 열다섯 분이고요, 내년에는 7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일단 저도 규모에 비해서 상임위원 수가 엄청, 입장권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경영관리 전담 상임이사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이사장님도 계시고 상임이사님을 한 분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큼 많은 소재들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소재 확보한 분량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되시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이제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집을 해 나가야 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개관 초기에는 텅텅 비어 있겠는데요? 개관이 며칠이라고 하셨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개관은 저희들은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고……

○장경태 위원 내년 6월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문성요 있는데 개별 박물관들은 27년까지 될 거고, 내년에는 어린이체험관인데요 어린이체험관은 유물은 없는 거고, 어린이들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상임이사 줄여서 저는 1명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수정의견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새만금처럼 파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위원장님,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위원장 조응천 6명 많아요. 6명 그냥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의결할 때의 상황을 고

려해서 이사장하고 해서……

○소위원장 조응천 홀수로 되어야 된다고?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7명 해야 되겠네, 홀수로 하려면은.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7명으로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응천 예, 7명 하세요, 홀수로.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투를 쥐야지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줄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계속하시지요. 법안 하나라도 더, 계속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응천 잠깐 간식 좀 먹고. 6시 반에……

○김교흥 위원 6시 반?

○송석준 위원 너무 늦어요. 아니, 이게 오히려 휴식 없이 해서……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그러면 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조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8)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심사자료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127.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127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입니다.

이 법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공간정보’라는 용어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임을 명확히 하고 이 법 제91조에 따른 각급 지명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정의 신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공간정보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명의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만 안 제3조에서 ‘지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단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물·지역이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이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31페이지, 132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지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일정한 규격과 통일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조응천 의원님 안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지도간행심사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기본도 등 기본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기본도가 등장하면서 현행법상의 기본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본도가 국가기본도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은 정밀도로지도가 공공측량시행자의 성과물인 경우 일반지도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도간행심사를 생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이 수록돼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대상을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계 없이는 사람이 해석·식별할 수 없는 전자지도인 정밀도로지도를 일반지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는 등 심사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밀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의 신청 및 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해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구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증이나 수첩 재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측량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55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장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측량업 등록 신청, 변경·지위승계·휴업·폐업 등에 관한 신고, 측량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등의 전자적 접수에 관한 사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전자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65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지명 관련 정책의 수립, 지명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으로 명확히 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지명 관련 심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중에 지명 관련 정책의 수립, 지명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기타 자

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70페이지에서부터 17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입니다.

지명의 심의·의결 절차를 원칙적으로 2단계로 구성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지명은 상위 행정관청에 속한 지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명 결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지명의 심의 의결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지명 결정 및 도로안내판 제작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공식 명칭에 따른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는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급 지명위원회는 행정주체 내부의 심의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대외적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은 그 지명위원회가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지명 결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취지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급 지명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지명 결정 원칙이 현재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규율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75페이지에서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지명에 대해서 하위 행정관청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상위 행정관청에 속한 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명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명 결정 과정에서 하위 행정기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하급 행정기관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시·도지사가 지명

부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구 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부터 181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82페이지는 조응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안의 부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에 따라서 지명 결정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 법 시행일 당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고, 조오섭 의원님 안에 따라서 측량업 등록증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개정 대상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을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을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83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본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6)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3)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7)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3)

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

(18시24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5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바

주시기 바랍니다.

3권 17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 대상이 사업주체등·설계자 및 감리자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제외하고 있어서 이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분쟁조정과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구상책임을 동시에 처리해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수급인 외에 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1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관리비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회계처리나 계약사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서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회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감사 품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데 따른 혼란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서 면제요건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도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법 개정 취지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사인에게 제출받은 회계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회계 감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계감사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나 현행법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큰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정의견은 28페이지에서부터 수록을 해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에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므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시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이나 낙찰의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 결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실익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등에 관해서 입주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서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공개는 웹사이트로 통일해서 공개하고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도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별도로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드렸고, 개정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별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의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8페이지에서부터 수락을 해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의무적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 보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의계약 방식의 선정방식을 포함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제27조에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3페이지에 수록해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김교홍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알린 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리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사유를 추후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비 공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회계감사 요건과 비슷하게 300인 이상은 의무화하고 300인 이하는 관리규약으로 자체 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조응천 24쪽이지요?

○장경태 위원 35페이지에 대표자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300인 회계감사 요건과 비슷하게 300인 이상으로는 의무화, 300인 이하로는 관리규약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수정의견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경태 위원 가능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몇 쪽이지요?

○장경태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35쪽에?

○장경태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관리비 등의 공개인데요. 이렇게 하면 관리규약으로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소위원장 조응천 관리비 내역을 어떻게 하시자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회계감사 요건에서도, 저희가 앞의 항에서도 300인 이상의 공동주택과 이하의 공동주택에 의해서 감사 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회의록 및 관리비 등의 공개를 300인 이상은 의무화하고 300인 이하의 소규모, 중소규모의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위임할 수 있게 혹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달리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원래 박상혁 의원안 취지와 관련한 겁니까, 이게?

○**장경태 위원** 박상혁 의원님은 전체를 다 의무화하는 건데요. 전문위원님 의견이 전체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관리규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300인으로 규정을 줌……

○**김교흥 위원** 쪼개자는 거지.

○**장경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저는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과 비용 부담 우려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는 면제를 줌 하자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견을 냈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은 회계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차관님, 지금 이렇게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실제 내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런 결정으로 난맥상에 빠져 있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에 비추어서 차관님,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 좀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여러 가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상황을 입주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일단 전문위원 의견에 수긍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이분들이 감당할 정도는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현재 운영 상황으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면……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생활의 기본원칙인데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정부가 강제로 ‘너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외부감사를 세게 하면 서민 생활, 그게 어찌면 진짜 서민들한테는 작은 푼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또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안은 굳이 정부가 너무 강하게 외부 감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몇 쪽이지요, 그게?

○**장경태 위원** 24쪽.

○**소위원장 조응천** 24쪽은 계속 토의로 하시고요. 아까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것은 조문화를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아까 그게 35쪽 관련이지요? 그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조문화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예.

○**소위원장 조응천** 한 번 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여하튼 간에 공개의 방법은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그렇게 조문화하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24쪽은 계속 심사인데 24쪽 한 조문만 남겨둘 수는 없다고 그러네.

○**장경태 위원** 뒤에 연동돼 있어서요. 아마 뒤에 관리, 입찰방식이랑 뒤에 다……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장경태 위원 김교홍 의원님 안이 외부의 회계
감사 면제사유로……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그게 아니고 박상혁
의원안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다 걸린대요.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페이지에 있는
안이 뒤의 45페이지 쪽쪽 연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지만 나머지 다른 부수 법안들이 연동
돼 있어서 아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요, 박상혁 의원안.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박상혁 의원안……

○소위원장 조응천 의원별로 지금 구분이 되거
든요.

○김교홍 위원 박상혁 의원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24페이지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장경태 위원 송석준 위원님은 이것을 반대하
시니까요.

○소위원장 조응천 사적자치를 침해한다는 취지
신데 어떻게……

○김교홍 위원 송 위원님, 이거 그러면 넘어가
시지 뭐 문제가 있어요, 24쪽?

○소위원장 조응천 그냥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수정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될까?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런데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면제사유가 돼요, 동의만 받으시면.

○김교홍 위원 동의받으면 돼.

○장경태 위원 정 불안하시면 정족수를 줄이서
서 3분의 1……

○송석준 위원 차관님, 문제 없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24쪽에 있는
의무관리 대상은 현재 300세대 이상인데 앞으로
는 150세대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등은 더
포함하는 이 정도 내용이고요. 회계감사를 하더
라도 비용은 1년에 한 1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
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정안만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
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5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
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

(18시43분)

○소위원장 조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건
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권 61페이지입니다. 김교홍 의원님 안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해
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
예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이
상……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응천 예.

○**송석준 위원** 지금 상정 안전에 건설산업기본법은 좀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소위원장 조응천** 아, 그래요?

○**송석준 위원** 예, 그래서 이 안전 건설산업기본법은……

○**소위원장 조응천** 일단 그러면 이 3건은 미루고요.

○**송석준 위원** 예, 미뤄 두고 우선 할 수 있는 법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예, 그다음 것부터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의사일정 제45항……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국토정보공사법 이것도 지금 아주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이 아주 아주 좀 반발 이런 의견들이 강합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그래도 이게 제정법인데 일단 검토보고라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검토보고라도 할 수 있게.

○**송석준 위원** 그래서 상정을 오늘은 좀 보류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같이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어차피 안 되더라도 검토보고라도 간략하게 좀 할 수 있게……

○**장경태 위원** 들어 보시지요.

○**김교흥 위원** 검토보고만 들어.

○**장경태 위원** 건산법도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조응천** 검토보고만 일단 들읍시다. 일단 제정법이고 그동안에 계속 미뤄 왔잖아요.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제가……

○**소위원장 조응천** 지금 시간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무난한 법을 먼저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검토보고 빨리 듣고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 여기서 합의된 법안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7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소위원장 조응천** 아니, 글썄요, 제정법 지금까지 계속 미뤄 왔잖아요. 검토보고만 듣고 그리고 정부 의견 듣고 그리고 넘어가자고요.

○**송석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73)

4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3)

(18시47분)

○**소위원장 조응천** 의사일정 제44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의사일정 제45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요.

○**수석전문위원 최시역** 예, 소위 심사자료 5권입니다. 5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공사를 설립해서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제기된 의견으로는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민간의 업무 영역으로 공사의 업무 영역을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할 경우 민간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공사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아서 제정안 심사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조항입니다. 목적조항은 현재 공사 설립 근거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의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정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학회나 정보산업협회 등에서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기된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2조부터 5조까지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등기, 사무소 및 정관 등 공사 설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6조, 강기윤 의원님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원용을 하고 있는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기윤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공사의 사업 영역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공사의 업무 수행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등 민간사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측량학회나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서 제기된 의견들은 그 바로 밑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간사업자 업무영역 침해 우려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뒤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7조, 8조입니다.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정원,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입니다.

공사의 재원이나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말의 잉여금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을 할 부분들이 있고 또 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의견은 27페이지, 28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16조, 17조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공사에 대한 재산상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따라 공사가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실제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또 공사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예와 같이 채권 등 매입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제18조입니다.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으로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의 범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수정의견은 35페이지에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19조부터 24조까지입니다.

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제24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강기윤 의원님 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하며,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윤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돼 있는 공사 및 공사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뒤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공사의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2페이지 이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이 2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공시법,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7시에 일어나셔야 돼 가지고.

○송석준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다음에 어차피 또……

○소위원장 조응천 마무리하시요. 그리고 건설국에서 오늘 하루종일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이거 논의를 못 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송석준 위원 가격공시법도 다음에 같이 우선 논의 다시 한번……

○김교흥 위원 건업법 좀 해 줘, 건업법.

○소위원장 조응천 건설산업기본법……

○장경태 위원 건산법도 해야 되는데.

○송석준 위원 다음에 한번……

○소위원장 조응천 하루종일 기다리신 것 아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거 이러다가 또 건설사고 나면 난리나요.

○송석준 위원 어차피 새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새 정부에서 사고 나면 다 책임 지실 거예요?

○소위원장 조응천 그러니까 광주 사고 후속 법안인데, 이것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이거 기록이라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번에 사실은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저희 여야가 같이 공감해서 발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것을 한나라고 하는 것을 좀 기록에 남겨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장경태 위원 저도 기록 좀……

○소위원장 조응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여야가 같이 노력하도록 간사 간 협의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저도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빠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또 만약에 저희가 이 지연된 법안으로 인해서, 법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께 더욱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꼭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차관님 이하 국토부 공직자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 행정실장님, 심의관님,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 교 흥	김 학 용	김 회 국	송 석 준
심 상 정	장 경 태	정 동 만	조 응 천
천 준 호	홍 기 원		

○청가 위원(1인)

조 오 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시	억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이	원	재
기 획 조 정 실 장	하	동	수
주 택 토 지 실 장	김	수	상
건 설 정 책 국 장	권	혁	진
도 시 정 책 관	김	복	환
건 축 정 책 관	엄	정	희

주 택 정 책 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 영 한
문 성 요